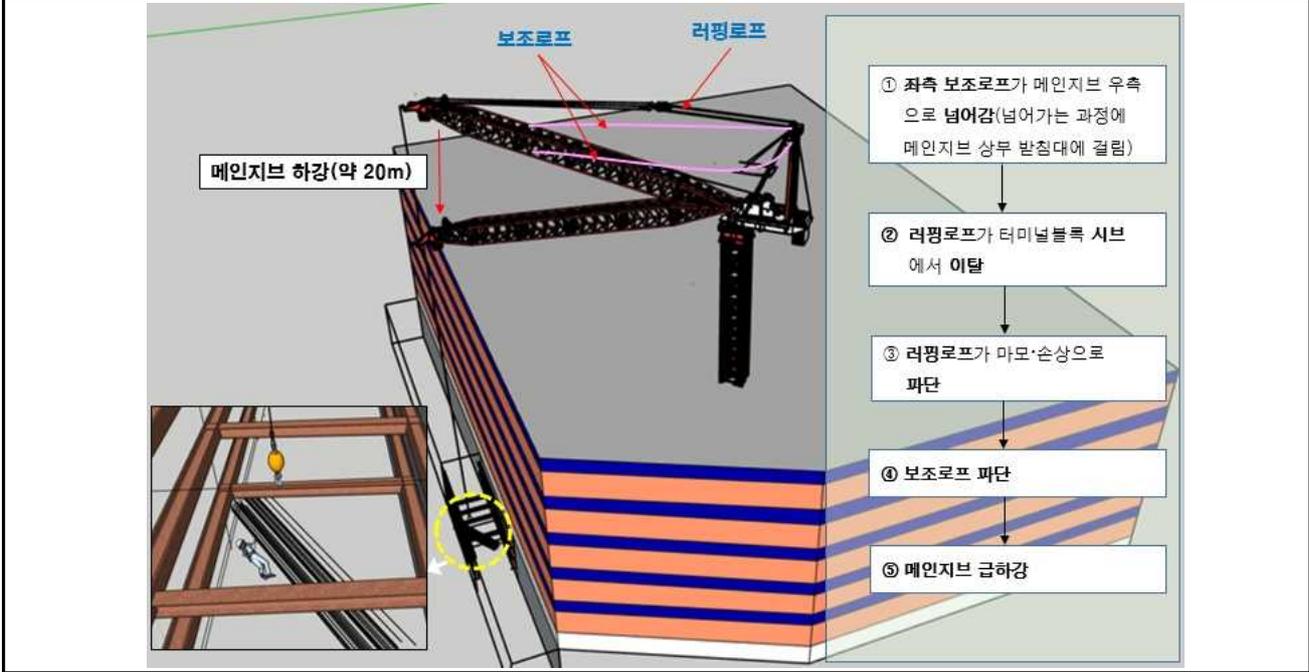


# 타워크레인(L형, 무인) 러핑로프 파단으로 철근 낙하, 사망

<b>공사명</b>	용산 ○○○신축공사	<b>발생일시</b>	2020. 02. 24(월) 12:02경
<b>재해형태</b>	낙하	<b>재해정도</b>	사망 1명
<b>소재지</b>	서울시 용산구 원효로	<b>공사규모</b>	지하 6F, 지상 7F 1개동

**재해개요**  
 2020.02.24(월) 12:02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소재 (주)○○건설 용산 ○○○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(L형, 무인) 사용하여 철근다발(약 1.7톤)을 인양하던 중 러핑로프 및 보조로프가 파단되면서 메인지브 하강과 함께 철근다발이 하부에 있던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재해자 위로 낙하하여 사망한 재해임

## 재해상황도



<b>안전대책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조로프 고정 개선 및 간섭 발생 받침대 설치 제한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크레인 메인지브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장치 기능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로프에 대한 결속, 처짐 방지 등의 고정방법 개선과 로프에 간섭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블록 받침대 등 설치 제한(금지)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리감독자 유해·위험방지 업무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리감독자는 크레인 사용 작업시작 전 운전장치의 기능, 주·횡행 레일의 상태, 와이어로프가 통과하고 있는 곳의 상태 등 점검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
-------------	--